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6
----------	-----

제출년월일 : 2019년 2월 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개정이유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보육교직원의 책임성을 종전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보육교직원의 책무 조항에 보육교직원이 하여서는 아니되는 금지 행위를 명시한 것으로, (안 제21조의2제2항)
- 나. 보육교직원의 금지 행위로 (1)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 (2) 어린이집 내·외부의 화장실, 창고 등의 폐쇄된 공간에 보육교직원 없이 영유아를 두는 행위 (3)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의 보육사업 관련 지침으로 정하는 아동 1인당 적정수준 급식비 이하의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2018. 11. 1. ~ 11. 21.)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첨부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한다.”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차량을 말한다)을 운행하는 경우, 그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
2. 어린이집 내·외부의 화장실, 창고 등의 폐쇄된 공간에 보육교직원 없이 영유아를 두는 행위
3.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의 보육사업 관련 지침으로 정하는 아동 1인당 적정수준 급식비 이하의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1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생략)</p> <p>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u>한다</u>.</p>	<p>제21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1. <u>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차량을 말한다)을 운행하는 경우, 그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u></p> <p>2. <u>어린이집 내·외부의 화장실, 창고 등의 폐쇄된 공간에 보육교직원 없이 영유아를 두는 행위</u></p> <p>3. <u>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의 보육사업 관련 지침으로 정하는</u></p>

현행	개정안
	<u>아동 1인당 적정수준 급식비 이하의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등</u>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보육교직원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의무를 세분화하여 보육교직원의 책임성을 종전보다 명확화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의안의 시행에 따른 제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가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

4. 작성자 : 보육담당관 김숙진(2133-5123)